

광주지방법원 2021. 2. 18 선고 2020가단5223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

담당변호사 김민지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웅

변론 종결 2021. 1. 14

판결 선고 2021. 2. 18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20. 3. 2.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취소한다.

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2020. 3. 2. 접수 제41951호로
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9. 11. 18. 아들인 C에게 256,000,000원(이하 '이 사건 금원'이라 한다)을 지급하였고, 원고의 대리인인 딸 D과 C의 촉탁에 따라 2020. 1. 23. '원고가 2019. 11. 18. C에게 256,000,000원을 대여하되, C이 2020. 1. 21.에 150,000원을, 2020. 2.부터 완제시까지 매월 21일에 2,150,000원씩(119회) 각 분할 변제하고,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 1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/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20년 제7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(이하, 이 사건 공정증서'라 한다)가 작성되었다.

나. C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으로 2019. 11. 18.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처인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분양대금 242,500,000원에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, 2020. 1. 20.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그 후 C은 2020. 3. 2.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0. 3. 2. 접수 제4195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.

그런데 C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자로서 무자력 상태에서 2020. 3. 2.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C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며, 피고는 C의 처로서 악의가 추정된다.

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 단

먼저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, 을 제5, 6호증의 각 기재,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원고와 C의 관계,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 한 경위,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후 약 두 달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, 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, 실제로 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분할 변제하기로 한 원금을 변제한 바도 없는 점,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경위,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,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증여세 부담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이고,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C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).

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(대여금 채권)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 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차웅

별지